

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4. 3. .
발 의 자 : 대구광역시의회
(운 영 위 원 장)

1. 제안이유

가.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폐영향평가 개선권고(2023.7.25.) 및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(2023.11.24.)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신설(안 제5조의2)
- 나. 정책연구용역 관련 위원회 위임에 따른 소위원회의 업무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다.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 : 붙임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
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위원회 심의 ·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

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3. 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 및 정책연구용역”으로 한다.

부 칙

i)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</p> <p>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제척된다.</p> <p>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p> <p>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p> <p>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</p> <p>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p> <p>② 위원회 심의 · 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</p>

	<p><u>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</u></p>
제8조(소위원회) ① (생 략)	제8조(소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<u>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	② <u>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</u>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<u>정책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된 정책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</u>
3. (생 략)	4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운영 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	제12조(운영 세칙) ----- ----- <u>운영 및 정책연구용역</u> ----- ---.

관 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